

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

- ❖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
-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 (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)

□ 시행년도 : 2011년도

□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6. 1. 1 ~ 12. 31.
- 지원대상 :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
 - *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,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
- 추가지원요건
 -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
 -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
 -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

※ 용어해석

- ‘정기적’ 이라 함은 월 10회 이상 또는 일정한 간격(주 몇 회, 특정 요일, 며칠 간격 등)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
- ‘사회활동’ 이라 함은 특정 기관, 단체, 업체,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소속(등록)되어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(재직, 재학증명 또는 소속(등록)증명원 등으로 확인)
- ‘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’ 라 함은 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

- 급여종류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방문간호지시서

○ 202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제주시	서귀포시	비고
10,149,400	8,294,600	1,854,800	

○ 급여비용 : 20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와 동일

- 지원기준 내에서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방문간호지시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국고지원 단가 적용

☞ 추가지원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시간이 소멸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(잔여시간 이월분 포함)

☞ 추가지원시간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

○ 지원기준 : 월 30시간 ~ 90시간

활동지원 급여의 구간	서비스지원 종합점수	월 한도액	시간환산
1~5구간	345점이상	최종증수급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또는 한부모·조손가족 - '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× 90시간	90
		345점 이상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또는 한부모·조손가족(최종증수급자 제외) - '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× 70시간	70
		그외 수급자 - '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× 30시간	30
6~15구간	42점~344점	'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× 30시간	30
특례	42점미만 (기존수급자)	'26년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× 30시간	30

※ 용어해석

- 최종증수급자

(성인)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(X_1)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사람
(아동)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(X_1) 영역의 합산점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
기존 활동지원등급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

- 가구환경 기준

- 1인(독거)가구 : 수급자가 19세 이상이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다른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
-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한부모 및 조손가족 : 수급자가 19세 미만 아동이고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

※ 가구환경 판단기준은 국고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참조

※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5) 최종증수급자 점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

- 본인부담금 : 없음
- 지원방법 : 제공기관을 통하여 바우처 서비스 지원
- 업무위탁 :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□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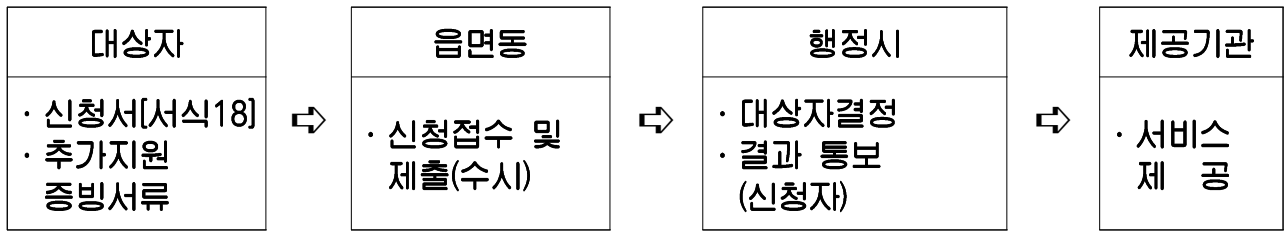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수시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구비서류 : 신청서[서식18], 개인정보제공동의서[서식20]
추가지원이 필요한 증빙서류
- 자격확인 :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시스템(국비사업 서비스 상태 - 서비스시행중) 자격확인 후 지원시간 결정
- 변경신청 :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갱신, 활동지원 구간의 변경 등으로 지원시간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[서식18]을 해야 지원시간이 변경됨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

□ 자격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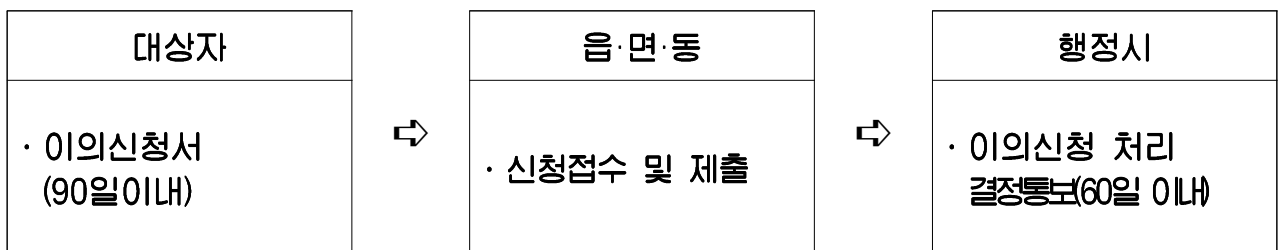
- 행정시(읍면동)에서는 활동지원 추가지원수급자 적격여부를 연 1회 확인조사 실시하여 1인가구, 취약가구 여부, 사회활동 여부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중지처리
- 행정시에서는 매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(신규, 갱신, 변경, 재조사, 이의신청), 공단 추가급여 확인조사 등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시간 감소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원시간 변경 입력조치(매월 1일 ~ 27일 18:00한)
- 행정시에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, 행복e음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지원시간 적격여부 등에 대한 자격관리 철저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「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지급급여 징수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

○ 선정절차



○ 이의신청절차



□ 기타사항

- 대리신청자의 자격기준, 기간연장시 처리기준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.

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

- ❖ 일부 최종증 수급자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사 배치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상시돌봄 체계 확립, 취약계층에 대한 최적의 복지시스템 구현

□ 관련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
-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(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)

□ 시행년도 : 2019년도

□ 추진배경

- 국비사업 및 도 추가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이 1일 최대 16시간에 불과, 일부 최종증 수급자인 경우 심야시간대(22:00~06:00)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
- 24시간 활동지원사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 상시돌봄 체계 확립

□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지원대상 :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, **최종증 수급자**이면서 다음 ①~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
 - ① (신체상태)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
 - ② (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)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
 - ③ (거주요건)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

※ 용어해석

- 최종증수급자

(성인)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(X_1)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사람
(아동)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(X_1) 영역의 합산점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
기존 활동지원등급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

- 1인(독거)가구 : 수급자가 19세 이상이고, 세대내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

- 취약가구 :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가구환경 판단기준은 국고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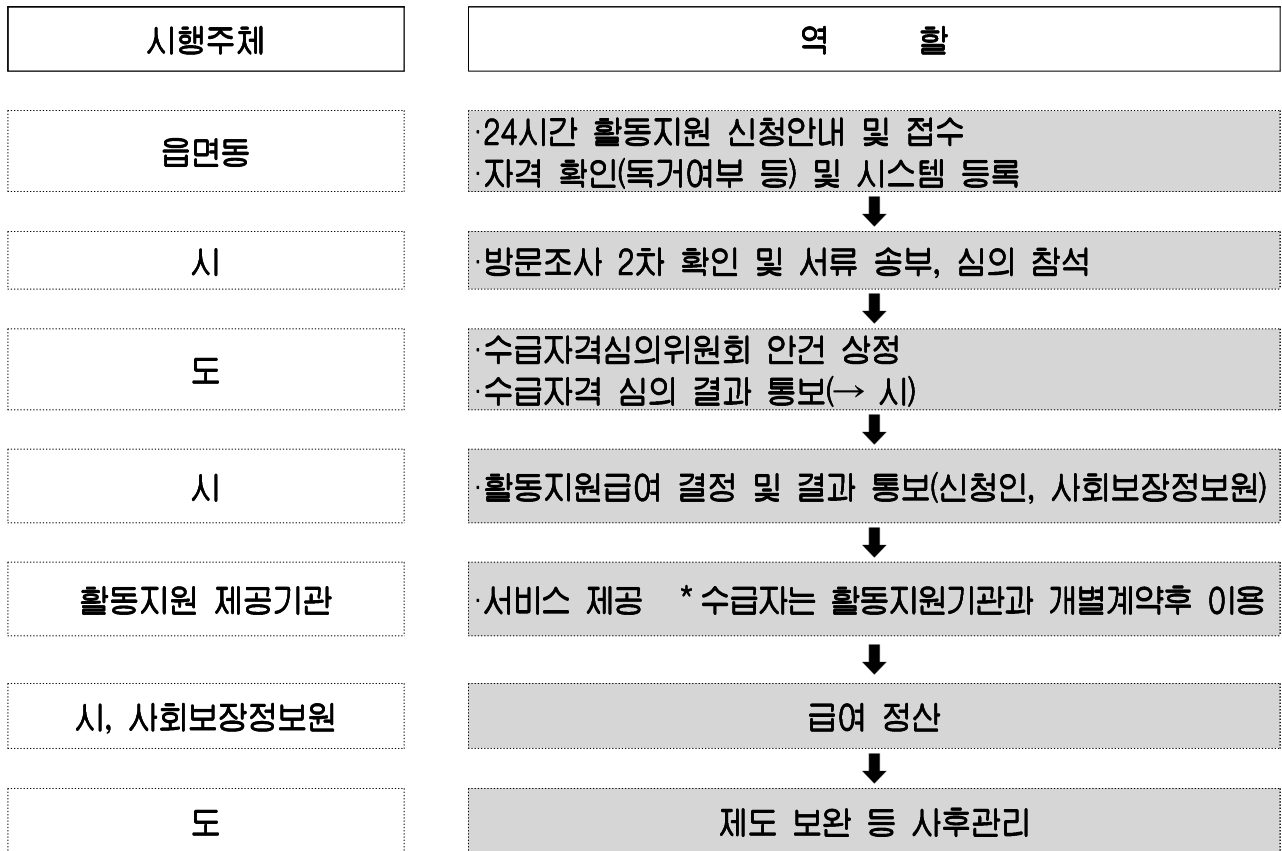
※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5) 최종증수급자 점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

- 예산 및 집행 :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예탁금 집행
- 지원배제 :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)에 근거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처분을 받은 장애인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배제
- 지원기준 및 급여비용 :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와 동일(월 360시간 한도)
 - 국고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되며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
 - 도 추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안됨
- 본인부담금 : 없음
- 지원방법 : 제공기관을 통하여 바우처 서비스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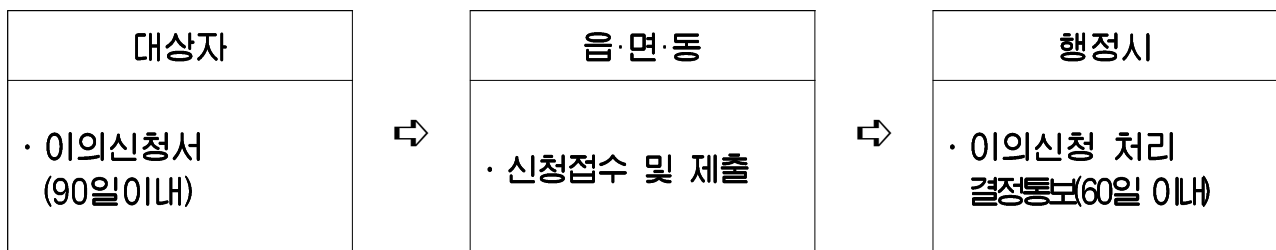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절차

- 신청기간 : 수시
- 신청장소 : 신청자(대상자)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
- 구비서류 : 신청서[서식19],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[서식20], 필요시 기타 24시간 활동지원 필요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 등)
- 읍면동 활동지원사업 담당자는 가구환경(독거 등),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등에 대한 1차 확인 후 신청서를 행정시로 제출
- 행정시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후 현장 방문하여 [서식21] 조사를 실시한 후 도 장애인복지과로 심의 자료 제출, 수급자격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
- 행정시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해서 행복e음 차세대 바우처 대상자 정보에 지원시간 변경 입력조치

○ 업무흐름도



○ 이의신청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(이의신청)에 의함



□ 자격관리

- 행정시에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, 행복e음 시스템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지원시간 적격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관리
- 대상자 자격변동시(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추가되는 경우 등)에는 종전의 도 추가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시간·급여를 산정
- 행정시에서는 연 1회이상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격유지 및 중지 결정하고 도에 결과 보고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「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지급급여 징수할 수 있음

□ 기타사항

- 대리신청자의 자격기준, 기간연장시 처리기준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